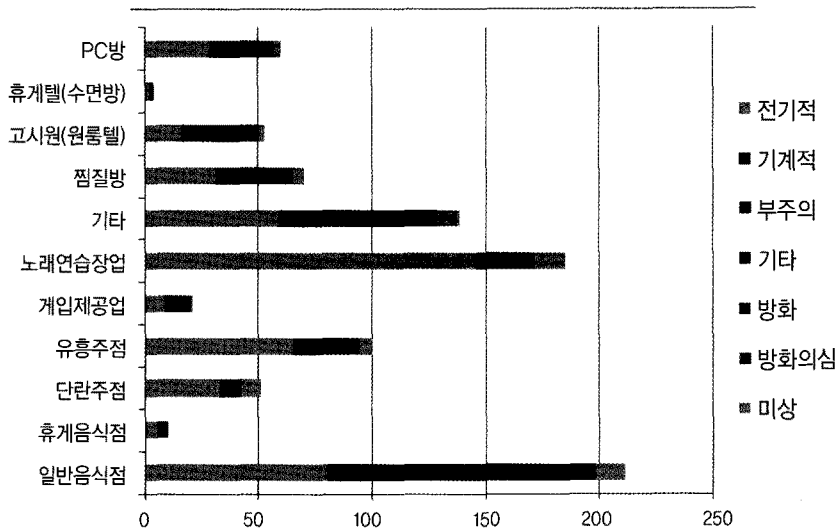


다중이용업소 위험관리 및 보험

글 장태호 KFPA 보험영업팀 대리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에게 발생한다. 아래 표는 2010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기적인요인과 부주의에 따른 화재가 대부분이다. 다중이용업소의 보험가입 현황은 2009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50.1%만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호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위험분석과 이에 대한 보험상식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표 1〉 2010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발생건수



1.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노출위험

가. 재산손해

다중이용업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화재(낙뢰)로 인한 재산손해는 필연적이다. 여기서 재산손해란 다중이용업소의 건물, (인테리어)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에 대한 손해와 업소를 방문한 타인의 재산손해가 있다.

나. 인명피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한번 발생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만큼 치명적이다. 대부분의 인명피해는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한 이용객으로서 영업을 위한 어두운 조명 및 피난로의 폐쇄 등으로 인명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다. 배상책임

다중이용업소는 일반적인 주택, 사무실, 공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뿐만 아니라, 다수인이 출입하는 특성상 배상책임과 관련된 사고가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주요 배상책임 손해로는 관리하는 시설 및 업무의 수행에 따른 사고, 음식물의 제조·판매·공급한 경우에 그 음식물로 인하여 생긴 사고, 가스로 인한 폭발·파열·화재 및 노출로 인한 사고 등이 있다.

라. 임차자책임

다중이용업소 중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 중 임차자배상책임에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재로 임대인 목적물의 멸실, 훼손될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상 임대인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 특히 이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구상을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손해가 발생한다.

2. 노출위험별 보험상식

가. 재산손해

다중이용업소 소유의 재산손해는 화재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화재가 번진 경우에는 대물배상책임담보특약을 첨부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

나. 인명피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다중이용업소 자신의 인명피해는 생명·상해보험에 가입하여 보장받으며, 타인의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가 특수건물의 소유자라면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을 가입하여 보장받는다.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인사고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 배상책임

배상책임은 수많은 특약이 있으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등이 있다.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업종별 해당될 수 있는 배상책임의 위험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라. 임차자책임

임차자인 경우에는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거나, 종합보험의 임차자배상책임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데 임차자특약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므로 옮겨붙은 화재나 제3자에 의한 화재사고의 보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낫다. ☞